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53

발의연월일: 2020. 7. 15.

발 의 자:이주환·엄태영·정희용

권명호 · 최승재 · 김성원

이헌승 · 태영호 · 서일준
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「주택법」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매입 대상의 범위를 "기존주택"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,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,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건축법」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3조).

법률 제 호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 제목 중 "기존주택"을 "기존주택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라기존주택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라기존주택 및 기존건축물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기존주택"을 "기존주택 및 기존건축물"로 한다.

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(이하 이 조에서 "기존건축물"이라 한다)을 매입하여 공공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.
-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
- 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
- 3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제43조(공공주택사업자의 <u>기존주</u> 제43조(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 택 매입) ① (생 략) 택 등 매입) ①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「건축 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(이 하 이 조에서 "기존건축물"이 라 한다)을 매입하여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.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 호에 따른 업무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 -----제1항 및 제 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기존주택 및 기존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 원할 수 있다.

③ 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 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며, 매입기준 등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· .
④ 기존주택 및 기존건축물